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규격 등 제한 관련 규칙 위임 근거 마련〉
■ 채현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728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채현일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7. 25.
3. 회부연월일 : 2025. 7.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는 현수막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은 그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반면,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하여 게시하는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함.

이러한 법령체계에 대하여 선거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는 유사한 사안을 규율하는 각 조항간에 법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수막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경우 그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58조의 2제2항 신설).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현수막을 사용하여 허용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경우 그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생략) <신설>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현수막을 사용하여 허용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경우 그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2. (생략) 3.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제58조의2 단서를 위반하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2. (현행과 같음) 3. ----- -----제58조의2제1항 단서-----

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현행법 제58조의2는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는데,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제1호),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제2호),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제3호),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제4호)에는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¹⁾

해당 조문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표시된 현수막 등을 사용한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빙자한 선거운동이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특정 행위에 의한 투표참여 권유를 제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2014. 5. 14.)되었음.

1)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런데, 현수막을 사용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의 제한과 관련하여, 제한되는 행위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허용되고 있는데,

현재 투표참여 권유가 허용되는 현수막에 관한 구체적인 규격이나 게시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투표 참여 권유를 명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용 현수막과 유사하게 제작된 현수막으로 인하여 유권자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임.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이며,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의 경우에도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책수단으로의 적절성도 갖춘 것으로 보임.²⁾

2)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256조제3항제3호에서는 제58조의2 단서를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³⁾ 개정안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을 위반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경우도 해당 벌칙적용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256조제3항제3호의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경우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그 규격 및 게시 방법 등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도심 미관 저해, 환경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용 현수막과 유사하게 제작될 경우 유권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규격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규율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이며,

3)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제58조의2 단서를 위반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④ - ⑤ (생략)

개정 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허용된 규격이나 게시방법 등을 위반하여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에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함께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2